

2020.01.08

## 『관세법』 일부 개정 안내

### I. 개요

금년도 『관세법』 조항 일부가 변경 및 신설됨에 따라  
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.

### II. 주요사항

#### 1. 개정 사유

-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의 제고
- 징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
-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
-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1) 연대납세의무자 추가를 통한 징수 효율성 확대

-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자 추가 (§19조 제5항 및 §270조 제1항)
  -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 수령 및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
  -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관세포탈죄 적용

##### 2)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을 통한 납세자의 혼란 방지

- 가산금과 가산세의 일원화 (§41조 및 §42조)
  -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**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**

2020.01.08

## 『관세법』 일부 개정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3) 소비자의 편의 제공 및 제세 부담 완화

###### □ 특정물품의 면세 등 물품 추가 (§93조)

- 보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정물품 면세에 보석의 원석 및 나석 포함

###### □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관세 환급 (§106조의2)

-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

###### □ 입국장면세점 설치 근거 신설 (§196조 제1항)

-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함

###### □ 수출 검사 대상 물품 수수료 면제 (§247조 제3항)

-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

###### □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통 실태 조사 조항 신설 (§266조 제4항)

-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유통 실태 조사를 서면 실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경우 조사 결과 공개 가능

###### □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통고처분 면제 (§311조 제8항)

-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, 환경, 법 위반 동기와 결과,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 가능

2020.01.08

## 『관세법』 일부 개정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4) 징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

###### □ 고액·상습체납자의 감치 규정 추가 (§116조의4)

-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 감치 가능
  - 1) 관세의 3회 이상 체납,
  - 2)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,
  - 3) 체납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,
  - 4)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

###### □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근거 마련 (§116조의5)

-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###### □ 밀수출입 범칙물품의 임의적 몰수 대상 전환 (§282조 제2항)

-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 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

###### 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(§284조의2)

- 범칙 사건에 관한 조사 시작 여부,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및 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

2020.01.08

## 『관세법』 일부 개정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5) 납세자 권리 및 국내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

###### □ 권리구제 절차 명확화 (§118조 제6항)

-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·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 
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,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허용

###### □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(§118조의2, 4)

-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, 납세자 권리보호에  
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설정

###### □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및 소비자 보호 (§222조 제1항)

-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록

###### □ 손실 보상 확대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(§246조의2 제1항)

-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 검사 범위를 수출·수입·반송대상  
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

##### 6) 수출입 중소기업·중견기업 지원

###### □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 지원 (§173조 제3항 및 §329조 제6항)

- 중소기업,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 
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의 경우 국가 예산 범위 내 검사 비용 지원
-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함

2020.01.08

## 『관세법』 일부 개정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7)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규정 명확화

###### □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기준 법률 구체화 (§125)

-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

###### □ 보정방법 구체화 및 명확화 (§123조 제2항)

-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정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 가능하도록 함

###### □ 불복청구 가능 방법 추가 (§129조의2)

- 관세정보통신망 등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### □ 특허수수료 기준 마련 (§176조의2 제4항)

-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하는 경우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

###### □ 시행령 규정의 법률 승격화 (§42조의2)

-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 사유와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

◇ 『관세법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◇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

1.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

가.·나. (생략)

<신설>

2. (생략)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,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·가산금·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1. ~ 3. (생략)

⑦ 이 법에 따라 관세·가산금·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, 제419조, 제421조,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⑧·⑨ (생략)

⑩ 납세의무자(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관세·가산금·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「국세기본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「국세징수법」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·가산금·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(제39조에 따라 부과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) 전

1.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(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)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(이하 “구매대행업자”라 한다)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: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(1)1)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(2)2)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

2. (현행과 같음)

⑥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가산세 - - - - -  
- - - - 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⑦ - - - - - 가산세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

⑧·⑨ (현행과 같음)

⑩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가산세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









<p>&lt;신 설&gt;</p>	<p>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⑦ 납부지연가산세(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)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21조제2항제11호 나목·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“제47조의4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” 및 “법정납부기한”은 각각 “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” 및 “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”으로, 같은 호 다목의 “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”는 “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”로 본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2조의2(가산세의 감면)</b>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 1.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: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.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(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기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):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.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: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.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: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5.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(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)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,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: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.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: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: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.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·통지(이하 이</p>





<p>가. ~ 라. (생략) 2.·3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06조의2(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) ①</b>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,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·제5항을 준용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06조의2(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,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·제5항을 준용한다.</p>
<p><b>제108조(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) ①·②</b> (생략)</p> <p>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108조(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) ①·②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필요한 경우 ----- ----- -----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0조(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) ①</b> (생략)</p> <p>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110조(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하며, 조사사유, 조사기간,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·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4조의2(장부·서류 등의 보관 금지) ① ~ ③</b> (생략)</p> <p>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. 다만, 조사목적은 달성하기</p>	<p><b>제114조의2(장부·서류 등의 보관 금지) ① ~ ③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/p>





	<p>재판 절차 및 그 집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16조의5(출국금지 요청 등)</b>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(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.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 1.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. 체납자 재산의 압류,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.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<b>제118조(과세전적부심사)</b>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, 제123조, 제126조, 제128조제5항·제6항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⑦·⑧ (생략)</p>	<p><b>제118조(과세전적부심사)</b>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 - - - - 제121조제3항, 제122조제2항- - - - - 제127조제2항, 제128조제5항·제6항, 제129조의2 - - - - -</p> <p>⑦·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18조의2(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)</b> ①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.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.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관세·법률·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. 1. 세관공무원 2.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대통</p>



	<p>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및 권한을 가지며,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신 설>	<p><b>제118조의3(납세자의 협력의무)</b>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·조사,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.</p>
<신 설>	<p><b>제118조의4(납세자보호위원회)</b>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(이하 “납세자보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(이하 “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.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. 위법·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.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.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(이하 “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.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. 1.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: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.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: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·법률·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(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아니 된다.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.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⑩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.</p>
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18조의5(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)</b>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(이하 이 조에서 “세관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세관장은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,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⑤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세관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.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<b>제123조(심사청구서의 보정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23조(심사청구서의 보정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,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</p>
<p><b>제125조(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)</b> 이의신청·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</p>	<p><b>제125조(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)</b> ① - - - - -</p>



<p>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</p>
<p><b>제161조(건본품 반출) ① ~ ④ (생략)</b>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·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</p> <p>2. (생략)</p>	<p><b>제161조(건본품 반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⑤ - - - - -</p> <p>1. 제4항- - - - 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65조(보세사의 자격 등) ①</b>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</p> <p>1.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2.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</p> <p>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에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(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</p> <p>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,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. 사망한 경우 3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</p> <p>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</p>	<p><b>제165조(보세사의 자격 등) ①</b>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(이하 이 조에서 “보세사 시험”이라 한다)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 1.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.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에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(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</p> <p>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</p>

<p>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</p> <p>1.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</p> <p>2.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⑥ 보세사의 직무,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,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</p> <p>2. 사망한 경우</p> <p>3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</p> <p>⑥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 1.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.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</p> <p>⑦ 보세사의 직무,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<b>제165조의3(보세사징계위원회)</b>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65조의3(보세사징계위원회)</b> ① - - - - - 제165조제5항제3호 - - - 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73조(세관검사장)</b>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·운반 등에 필요한 <u>비용</u>은 화주가 부담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<b>제173조(세관검사장)</b>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 비용(이하 이 항에서 “검사비용”이라 한다) - - - - -  다만, 국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「대외무역법」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<b>제176조의2(특허보세구역의 특례)</b>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76조의2(특허보세구역의 특례)</b>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 - - - -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(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- - - - -</p>










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특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)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,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,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, 범위, 방법 및 조사결과와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<b>제270조(관세포탈죄 등)</b> ① 제241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.</p> <p>1.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<b>제270조(관세포탈죄 등)</b> ① - - - - - 한 자(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) - - -</p> <p>1. - - - - - 수입한 자(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76조(허위신고죄 등)</b>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1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<b>제276조(허위신고죄 등)</b>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165조제3항 - - - - -</p>
<p><b>제277조(과태료)</b>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<b>제277조(과태료)</b>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 - - -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
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</p> <p>4.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284조의2(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)</b>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 1. 제290조 및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2.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, 송치, 통고처분(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)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<b>제311조(통고처분) ① ~ ⑦ (생략)</b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311조(통고처분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.</p> <p>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. 1.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.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</p>
<p><b>제328조(청문)</b>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65조제4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</p> <p>3. ~ 10. (생략)</p>	<p><b>제328조(청문)</b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제165조제5항에 따른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3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2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) ①·② (생략)</b></p> <p>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,</p>	<p><b>제32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③ - - - - -</p>

<p>제158조제2항, 제159조제2항, 제165조제2항, 제209조, 제213조제2항(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)·제3항, 제215조, 제222조제1항제1호,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----- ----- 제165조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(신청서 접수,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<b>제33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</b>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제3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8.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다.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<u>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</u></p> <p>라. 제124조제1항에 따른 <u>관세심사위원회</u></p> <p>마. 제165조의3에 따른 <u>보세사징계위원회</u></p> <p>바.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<u>보세관매장 특허심사위원회</u></p> <p>사. 제176조의4에 따른 <u>보세관매장 제도운영위원회</u></p> <p>아.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<u>원산지확인위원회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3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제6항-----</p> <p>-----</p> <p>8. 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----- 관세 정보위원회</p> <p>라.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<u>납세자보호위원회</u></p> <p>마. 제124조제1항에 따른 <u>관세심사위원회</u></p> <p>바. 제165조의3에 따른 <u>보세사징계위원회</u></p> <p>사.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<u>보세관매장 특허심사위원회</u></p> <p>아. 제176조의4에 따른 <u>보세관매장 제도운영위원회</u></p> <p>자.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<u>원산지확인위원회</u></p> <p>차. 제284조의2에 따른 <u>관세법칙조사심의위원회</u></p>